

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(최형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24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5.

발 의 자 : 최형두 · 김기웅 · 서일준
김기현 · 강승규 · 서천호
성일종 · 박성민 · 윤영석
박충권 · 김예지 · 우재준
한지아 · 정성국 · 김태호
권영진 · 김종양 · 조정훈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산지관리법」은 관광지 조성사업,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장기간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한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산지전용지의 중간복구를 허용하고 있으나, 그 대상 사업을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.

최근 건설공사비 급등, 부동산 PF 대출 고금리 등 건설경기 악화로 대규모 민자유치 개발사업의 장기화가 심화되고 있음. 이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경우, 이미 완료된 시설물의 노후화 및 주변 산지 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있어 적시적인 중간복구 필요성이 대두됨.

그러나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현행법상 중간복구 대상에 포함되지

않아,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제도적 제약을 받고 있음.

이에 「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」상 단계별 준공이 허용되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「산지관리법」상 산지전용지 중간복구 대상에 추가함으로써, 산림훼손과 산림재해를 방지하면서, 동시에 해당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적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(안 제39조제2항제1호라목 신설).

법률 제 호

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제2항제1호 중 “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신청을 한 자”를 “준공검사, 준공인가 또는 준공확인을 신청한 자”로 하고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「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」 제37조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준공확인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9조(산지전용지 등의 복구) ① (생략)	제39조(산지전용지 등의 복구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,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가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거나 산지경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를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스스로 중간복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간복구를 하게 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로 한정한다)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<u>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신청을 한 자</u>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---준공검사, 준공인가 또는 준공확인을 신청한 자</u>

가. ~ 다. (생략) <u><신설></u>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<u>라. 「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」 제37조에 따</u> <u>른 로봇랜드 조성사업의</u> <u>준공확인</u>
2. ~ 4. (생략) ③ ~ ⑤ (생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